



CIRCULAR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Republic of Korea

Phone :+82-70-8799-8501
Fax : +82-70-8799-8419
E-mail : jsupark@krs.co.kr
Person in charge : Park Jae-sung

To : 전 검사원 및 관련업체

No : 2020-1-E

Date : 2020.2.19

제 목(Subject)	9.131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 (규칙/적용지침 1편 및 전문공급자 승인 지침)
적 용(Application)	2020년 3월 1일 (검사신청일 기준)

1. 2019년판 선급 및 강선규칙/적용지침 1편 및 전문공급자 승인지침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조건부 선급증서 요건 신설
 - 2) 해양수산부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반영 등
2. 아울러, 이 내용 중 규칙은 은 2021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21년판 선급 및 강선규칙 1편에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는 2020년판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1편 및 전문공급자 승인 지침에 각각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규칙/적용지침 1편 및 전문공급자 승인지침 개정사항 --- 1부. (끝)

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사항

(제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Feb. 2020.



- 주요 개정 내용 -

(1) 2020.03.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조건부 선급증서 요건 신설

(1) 2020.03.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 제 2 절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p> <p>301. ~ 306. <생략></p> <p>307. 복원성시험 [지침 참조]</p> <p>1. <생략></p> <p>2. 1항의 복원성시험은 이들 선박의 비손상복원성이 의도하는 운항에 적절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비손상 복원성이 적절하다고 함은 선박의 크기 및 종류에 따르는 해당 기국의 기준 또는 우리 선급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길이 24 m 이상인 선박에 대한 비손상 복원성의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려하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결의 (Part A of IMO Res.MSC.267(85)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n intact stability, 2008 (2008 IS Code))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해당 기국이 다른 기준을 인정한 경우 이 기준을 선급등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국의 승인에 관한 증거는 선급등록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 제 2 절 <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p> <p>301. ~ 306. <현행과 동일></p> <p>307. 복원성시험 (2020) [지침 참조]</p> <p>1. <현행과 동일></p> <p>2. 1항의 복원성자료의 작성 및 승인시험은 이들 선박의 비손상복원성이 의도하는 운항에 적절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비손상 복원성이 적절하다고 함은 선박의 크기 및 종류에 따르는 해당 기국의 기준 또는 우리 선급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길이 24 m 이상인 선박에 대한 비손상 복원성의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려하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결의 (Part A of IMO Res.MSC.267(85)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n intact stability, 2008 (2008 IS Code))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해당 기국이 다른 기준을 인정한 경우 이 기준을 선급등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국의 승인에 관한 증거는 선급등록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절 증서 및 보고서</p> <p>501. 선급증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중등록검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 및 제조후등록검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은 선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우리 선급의 선명록에 등록하고 선급증서를 발급한다. 2.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선급증서를 발급한다. <p>502. 단기선급증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중등록검사 또는 제조후등록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때는 단기선급증서를 발급한다. 2. 선급증서를 대신하여 수리/검사장소 또는 폐선장소까지의 단일직항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단기선급증서를 발급한다. 【지침 참조】 <p><u><새롭게 추가></u></p> <p>503. ~ 50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절 증서 및 보고서</p> <p>501. 선급증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중등록검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 및 제조후등록검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은 선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우리 선급의 선명록에 등록하고 선급증서를 발급한다. 2.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선급증서를 발급한다. <p>502. 단기선급증서 (20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중등록검사 또는 제조후등록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때는 <u>선급증서 발행하기 전까지 유효하도록</u> 단기선급증서를 발급한다. 2. 선급증서를 대신하여 수리/검사장소 또는 폐선장소까지의 단일직항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단기선급증서를 발급한다. 【지침 참조】 <p>503. 조건부 선급증서 (20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급증서를 대신하여 수리/검사장소/또 다른 계선장소 또는 폐선장소까지의 단일직항 등을 허용하는 경우 조건부 선급증서를 발행한다. 여기서, 단일직항 등을 허용하는 경우라 함은 901. 5항 및 7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그 외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이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 선급증서를 발행한다. <p>504. 503. ~ 505. 504. (2020)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안
<p>505. 증서 및 보고서의 보관 선급증서, 단기선급증서, 건명서 및 검사보고서 등은 선장이 항시 선내에 보관하고 우리 선급 검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506. <생략></p> <p>507. 증서의 재발행 및 반환 1. 선급증서 또는 단기선급증서, 건명서 및 검사보고서를 분실 또는 손상했을 때,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재발행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단기선급증서를 가진 선박이 선급증서를 받은 때, 증서가 분실된 때를 제외하고 증서재교부를 받은 때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는 선급증서, 구선급증서 또는 단기선급증서를 즉시 우리 선급에 반환하여야 한다.</p> <p>508. ~ 509. <생략></p>	<p>506. 505. 증서 및 보고서의 보관 (2020) 선급증서 또는 단기선급증서 또는 조건부 선급증서, 건명서 및 검사보고서 등은 선장이 항시 선내에 보관하고 우리 선급 검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507. 506. (2020) <현행과 동일></p> <p>508. 507. 증서의 재발행 및 반환 (2020) 1. 선급증서 또는 단기선급증서 또는 조건부 선급증서, 건명서 및 검사보고서를 분실 또는 손상했을 때,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재발행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단기선급증서 또는 조건부 선급증서를 가진 선박이 선급증서를 받은 때, 증서가 분실된 때를 제외하고 증서재교부를 받은 때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는 선급증서, 구선급증서 또는 단기선급증서 또는 조건부 선급증서를 즉시 우리 선급에 반환하여야 한다.</p> <p>509. 508. ~ 510. 509. (2020) <현행과 동일></p>
<p>제 6 절 검사신청</p> <p>601. ~ 602. <생략> 603. 증서의 재교부 선급증서, 단기선급증서, 건명서 및 검사보고서의 재교부 신청과 반환은 선박소유자가 조치하여야 한다.</p> <p><이하 생략></p>	<p>제 6 절 검사신청</p> <p>601. ~ 602. <현행과 동일> 603. 증서의 재교부 (2020) 선급증서 또는 단기선급증서 또는 조건부 선급증서, 건명서 및 검사보고서의 재교부 신청과 반환은 선박소유자가 조치하여야 한다.</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p> <p>901. 선급정지 및 회복</p> <p>1. <생략></p> <p>2. 다음의 경우 우리 선급의 선급정지절차에 따라 선급이 정지될 수 있다. <새롭게 추가></p> <p>(1) ~ (5) <생략></p> <p>(6) 연차검사 시 지정된 또는 기한이 지난 계속검사항목이 검사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의에 의하여 연기되지 아니한 경우</p> <p>(7) 검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선급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가 만족하게 조치되었다고 확인한 경우 선급은 회복된다. 우리 선급이 결정한 선급정지는 선급정지사유가 발생한 일자부터 발효되며 지정된 항목 및/또는 검사가 조치되어 선급이 회복될 때까지는 유효하다.</p> <p>3.~ 6. <생략></p> <p>7. 계선 중인 선박이 기한을 지난 정기적 검사가 있는 상태에서 계선위치로부터 수리/검사/또 다른 계선장소까지 항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에 대한 선급정지는 보류될 수 있고, 우리 선급이 기한이 지난 검사 및 계선기간을 고려한 범위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는 조건으로, 계선위치로부터 수리/검사/또 다른 계선장소까지 단일 직항의 평형수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도하는 항해에 대한 조건이 명시된 단기선급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요건은 계선되기 전에 이미 선급이 정지된 선박에는 적용할 수 없다.</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p> <p>901. 선급정지 및 회복 <현행과 동일></p> <p>1. <현행과 동일></p> <p>2. 다음의 경우 우리 선급의 선급정지절차에 따라 선급이 정지될 수 있다. (2020) 선급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가 만족하게 조치되었다고 확인한 경우 선급은 회복된다. 우리 선급이 결정한 선급정지는 선급정지사유가 발생한 일자부터 발효되며 지정된 항목 및/또는 검사가 조치되어 선급이 회복될 때까지는 유효하다.</p> <p>(1) ~ (5) <현행과 동일></p> <p>(6) 연차검사 시 지정된 또는 기한이 지난 계속검사항목이 검사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의에 의하여 연기되지 아니한 경우</p> <p>(7) 검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선급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가 만족하게 조치되었다고 확인한 경우 선급은 회복된다. 우리 선급이 결정한 선급정지는 선급정지사유가 발생한 일자부터 발효되며 지정된 항목 및/또는 검사가 조치되어 선급이 회복될 때까지는 유효하다.</p> <p>3.~ 6. <현행과 동일></p> <p>7. 계선 중인 선박이 기한을 지난 정기적 검사가 있는 상태에서 계선위치로부터 수리/검사/또 다른 계선장소까지 항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에 대한 선급정지는 보류될 수 있고, 우리 선급이 기한이 지난 검사 및 계선기간을 고려한 범위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는 조건으로, 계선위치로부터 수리/검사/또 다른 계선장소까지 단일 직항의 평형수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도하는 항해에 대한 조건이 명시된 <u>조건부 선급증서</u> <u>단기선급증서</u>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요건은 계선되기 전에 이미 선급이 정지된 선박에는 적용할 수 없다. (2020)</p> <p><이하 현행과 동일></p>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사항

(제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Feb. 2020.



- 주 요 개 정 내 용 -

(1) 2020.03.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동등효력 요건 개정(해양수산부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반영),
- 도면승인 절차서(QP-18, Rev.43)- 표 7. “지부에서 승인하는 도면“ 개정내용 반영
- 복원성 시험 요건 개정 및 부록 1-2 비손상 복원성 지침 삭제 (2008 IS Code 요건 참조로 개정됨)
- 부록 1-1중 Tug Boat의 특기사항에 Fire-Fighting 재 신설

(1) 2020.03.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우리 선급의 규칙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p> <p>104. 동등효력 [규칙 참조]</p> <p>규칙 104.에서 “이 규칙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 등을 포함한다.</p> <p>(1) <u>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기준(ISO, KS, ASME, JIS 등)에 적합한 경우,</u></p> <p>(2) <u>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지침에 따라 승인된 경우, 또는</u></p> <p>(3) <u>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검증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여기서 검증된 사용실적이라 함은 충분한 기간 동안 손상 없이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한 사용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u></p> <p>(4) <u>국제선급 연합회(IACS)의 품질시스템 인증체계(QSCS)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서 이미 승인한 실적선의 동형선인 경우 (2020)</u></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우리 선급의 규칙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p> <p>104. 동등효력 [규칙 참조]</p> <p>규칙 104.에서 “이 규칙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 등을 포함한다.</p> <p>(1) <u>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공인된 국제 기준 (ISO, IEC 등) 또는 국가 기준 (KS, JIS, ASME 등)으로서, 선급기술규칙 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기준(ISO, KS, ASME, JIS 등)에 적합한 경우 (2020)</u></p> <p>(2) <u>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지침에 따라 승인된 경우, 또는</u></p> <p>(3) <u>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검증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여기서 검증된 사용실적이라 함은 충분한 기간 동안 손상 없이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한 사용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u></p> <p>(4) <u>국제선급 연합회(IACS)의 품질시스템 인증체계 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서 이미 승인한 실적선의 동형선인 경우 (2020)</u></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제조중등등록검사</p> <p>301. 제조중등등록검사 <생략></p> <p>302. 도면승인 【규칙 참조】</p> <p>1.~3. <생략></p> <p>4. 검사 및 시험방안서 조선소는 다음을 포함한 검사 및 시험을 받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방안을 해당 검사 및 시험에 앞서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검사 및 시험방안(ITP : Inspection and Test Plan)</p> <p>(2) <u>완결된 강제작업의 검사를 위한 방안 - 일반적으로 블록분할도를 말하며 선행탑재 및 탑재 또는 기타 관련단계에서 블록 상호간의 연결에 대한 상세를 포함한다.</u></p> <p>(3) 필요한 경우 용접 전 조립검사방안</p> <p>(4) <u>모든 수밀 및 풍우밀폐장치 뿐만이 아니라 구조시험(누설 및 정수압)방안</u></p> <p>(5) 비파괴 검사방안</p> <p>(6) 복원성시험방안</p> <p>(7) 시운전방안</p> <p>(8) 도장시공사양서 및 품질관리방안(PSPC 부기부호를 갖는 선박인 경우 표면처리에 대한 검사 및 도장절차 포함)</p> <p>(9) 하역설비검사방안(해당되는 경우)</p> <p>(10) 선상검사방안(Onboard Test Procedure)</p> <p><새롭게 추가></p> <p>(11) 특정 선박형식 또는 정부대행요건에 대한 기타 방안(해당되는 경우)</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제조중등등록검사</p> <p>301. 제조중등등록검사 <현행과 동일></p> <p>302. 도면승인 【규칙 참조】</p> <p>1.~3. <현행과 동일></p> <p>4. 검사 및 시험방안서 (2020) 조선소는 다음을 포함한 검사 및 시험을 받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방안을 해당 검사 및 시험에 앞서 검사원에게 승인용 또는 참고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1) 승인용</p> <p>(가) 검사 및 시험 방안서(ITP : Inspection and Test Plan)</p> <p>(나) 용접 전 조립검사 방안(필요한 경우)</p> <p>(다) 모든 수밀 및 풍우밀 폐쇄장치를 포함한 뿐만이 아니라 구조시험(누설 및 사수시험 포함 정수압)방안서</p> <p>(라) 비파괴 검사방안</p> <p>(마) 복원성시험 방안서</p> <p>(바) 시운전 방안서</p> <p>(사) 도장시공 사양서 및 품질관리방안(PSPC 부기부호를 갖는 선박인 경우 표면처리에 대한 검사 및 도장절차 포함)</p> <p>(아) 하역설비 검사 방안서 (해당되는 경우)</p> <p>(자) 선상검사 방안서(Onboard Test Procedure)</p> <p>(차) 선체건조감시 계획서 (해당되는 경우)</p> <p>(카) 특정 선박형식 또는 정부대행요건에 대한 기타 방안(해당되는 경우)</p> <p>(2) 참고용</p> <p>(가) <u>완결된 강제작업의 검사를 위한 방안 - 일반적으로 블록분할도를 말하며 선행탑재 및 탑재 또는 기타 관련단계에서 블록 상호간의 연결에 대한 상세를 포함</u></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안
<p>307. 복원성시험 [규칙 참조]</p> <p>1. 규칙 307.의 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m 미만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선박은 적용을 제외한다.</p> <p>(1) 예인, 해난구조, 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2) 부선 (3) 여객선이 아니거나 카페리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호수, 하천, 항만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4)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5) 위험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p> <p>2. 복원성시험이라 함은 경사시험과 동요시험을 말한다. 다만, 지침 부록 1-2에 규정된 계산식에 의하여 선박의 횡요주기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요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p> <p>3. 비손상 시의 복원성기준 및 복원성자료 작성기준은 지침 부록 1-2에 따른다.</p> <p>4. 규칙 307.의 2항에 따라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승인절차는 지침 부록 1-10에 따른다.</p>	<p>307. 복원성시험 (2020) [규칙 참조]</p> <p>1. 규칙 307.의 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m 미만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선박은 적용을 제외한다.</p> <p>(1) 예인, 해난구조, 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2) 부선 (3) 여객선이 아니거나 카페리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호수, 하천, 항만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4)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5) 위험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p> <p>2. 복원성시험이라 함은 경사시험과 동요시험을 말한다. 다만, 2008 IS Code Part A 지침 부록 1-2에 규정된 계산식에 의하여 선박의 횡요주기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요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020)</p> <p>3. 비손상 시의 복원성기준 및 복원성자료 작성기준은 지침 부록 1-2에 따른다.</p> <p>3. 4. 규칙 307.의 2항에 따라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승인절차는 지침 부록 1-10에 따른다. (2020)</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제조후등록검사</p> <p>401. 제조후등록검사 【규칙 참조】 <생략></p> <p>402. 도면의 제출 【규칙 참조】</p> <p>1. 제조후등록검사 시에는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의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및 자료의 목록을 추가로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제출받아야 한다.</p> <p>(1) 선체관계 : 각 3부씩 제출(다만, (자), (차), (타), (하) 및 (거)는 2부 제출)</p> <p>(가) 일반배치도</p> <p>(나) 중앙횡단면도</p> <p>(다) 강재배치도</p> <p>(라) 외판전개도</p> <p>(마) 횡격벽 구조도</p> <p>(바) 타 및 타두재 구조도</p> <p>(사) 선미재 구조도</p> <p>(아) 창구덮개 구조도(해당 선박에 한함)</p> <p>(자) 용적도</p> <p>(차) 적하지침서(해당 선박에 한함)</p> <p>(카) 적하지침기기 시험성적서(해당 선박에 한함)</p> <p>(타) 선체선도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해당선박에 한함) (2018)</p> <p>(파) 목재 적재 장치도(목재 만재홀수선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p> <p>(하) 복원성자료(배수량등록선도 또는 표 포함)</p> <p>(거) 손상복원성자료(해당 선박에 한함)</p> <p><생략></p> <p>(6) 기타</p> <p>(가) 검사보고서(건명서 및 최초기록부 포함)의 사본 : 1부</p> <p>(나) 본선이 보유하는 선급, 검사, 협약 등에 관한 증서의 사본 : 1부</p> <p>(다) 필요한 경우 본선의 경력, 현상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자료 : 1부</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제조후등록검사</p> <p>401. 제조후등록검사 【규칙 참조】 <현행과 동일></p> <p>402. 도면의 제출 【규칙 참조】</p> <p>1. 제조후등록검사 시에는 다음의 (1) ~ (5)의 도면 및 자료((1)의 (자) 및 (타) 는 제외)를 <u>승인용으로</u> 제출하여야 하며, <u>아래 (1)의 (자), (타) 및 (6)은 참고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u> 선박의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및 자료의 목록을 추가로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2020)</p> <p>(1) 선체관계 : 각 3부씩 제출(다만, (자), (차), (타), (하) 및 (거)는 2부 제출)</p> <p>(가) 일반배치도</p> <p>(나) 중앙횡단면도</p> <p>(다) 강재배치도</p> <p>(라) 외판전개도</p> <p>(마) 횡격벽 구조도</p> <p>(바) 타 및 타두재 구조도</p> <p>(사) 선미재 구조도</p> <p>(아) 창구덮개 구조도(해당 선박에 한함)</p> <p>(자) 용적도-<u>참고용(2020)</u></p> <p>(차) 적하지침서(해당 선박에 한함)</p> <p>(카) 적하지침기기 시험성적서(해당 선박에 한함)</p> <p>(타) 선체선도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해당선박에 한함)-<u>참고용(2020)</u></p> <p>(파) 목재 적재 장치도(목재 만재홀수선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p> <p>(하) 복원성자료(배수량등록선도 또는 표 포함)</p> <p>(거) 손상복원성자료(해당 선박에 한함)</p> <p><현행과 동일></p> <p>(6) 기타</p> <p>(가) 검사보고서(건명서 및 최초기록부 포함)의 사본 : 1부</p> <p>(나) 본선이 보유하는 선급, 검사, 협약 등에 관한 증서의 사본 : 1부</p> <p>(다)필요한 경우 본선의 경력, 현상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자료 : 1부</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 안
<p>403. 타선급선의 등록검사 또는 선급이전(TOC(Transfer of Classification)) (2017) [규칙 참조]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을 우리 선급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종류 및 검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선박의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및 자료의 목록을 추가로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하여 <u>제출받아야 한다.</u></p> <p>1. 제출도면 및 자료 (2018) (1) 선체관계 : 각 1부씩 제출 (가) 일반배치도 (나) 중앙횡단면도 (다) 강재배치도 (라) 외판전개도 (마) 횡격벽 구조도 (바) 타 및 타두재 구조도 (사) 선미재 구조도 (아) 창구덮개 구조도(해당 선박에 한함) (자) 용적도 (차) 적하지침서(해당 선박에 한함) (카) 목재 적재 장치도(목재 만재홀수선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2018) (타) 복원성자료(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 포함) (2018) (파) 손상복원성자료(해당 선박에 한함) (2018) (하)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12편 또는 13편)에 따라 건조된 선박인 경우 각 구조요소에 대한 건조두께, 신환두께 및 모든 자발적인 추가두께를 나타내는 도면 (2018)</p> <p><이하 생략></p>	<p>403. 타선급선의 등록검사 또는 선급이전(TOC(Transfer of Classification)) (2017) [규칙 참조]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을 우리 선급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종류 및 검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선박의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및 자료의 목록을 추가로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하여 <u>참고용으로 제출받아야 한다.</u></p> <p>1. 제출도면 및 자료 (2020) (1) 선체관계 : 각 1부씩 제출 (가) 일반배치도 (나) 중앙횡단면도 (다) 강재배치도 (라) 외판전개도 (마) 횡격벽 구조도 (바) 타 및 타두재 구조도 (사) 선미재 구조도 (사) (아) 창구덮개 구조도(해당 선박에 한함) (2020) (아) (자) 용적도 (2020) (자) (차) 적하지침서(해당 선박에 한함) (2020) (차) (카) 목재 적재 장치도(목재 만재홀수선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2020) (카) (타) 복원성자료(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 포함) (2020) (타) (파) 손상복원성자료(해당 선박에 한함) (2020) (파) (하)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12편 또는 13편)에 따라 건조된 선박인 경우 각 구조요소에 대한 건조두께, 신환두께 및 모든 자발적인 추가두께를 나타내는 도면 (2020)</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안
<p>제 5 절 증서 및 보고서</p> <p>502. 단기선급증서 [규칙 참조]</p> <p>1. 규칙 502.의 2항에서 “단일직항 등을 허용하는 경우”라 함은 규칙 901.의 5항 및 7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020)</p> <p>2. <u>규칙 502. 이외에도 우리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기선급 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u></p> <p>〈이하 생략〉</p>	<p>제 5 절 증서 및 보고서</p> <p>502. 단기선급증서 [규칙 참조]</p> <p>1. 규칙 502.의 2항에서 “단일직항 등을 허용하는 경우”라 함은 규칙 901.의 5항 및 7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020)</p> <p>2. 규칙 502. 이외에도 우리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기선급 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부록 1-1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 및 기재요령

1. 선급부호

1.1 선종 및 특기사항

1. ~ 14. <생략>

선종	특기사항		비고
15-1. Tug Boat	A* (용도)	B (노출갑판 상에 요 구되는 방폭)	A* : 특기사항, A(용도),와 관련하여, Offshore Support Vessel(OSV)의 특기사항 부호 인 FFS1, FFS2, FFS3 또는 FF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OSV의 특기사항 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19) - : Tug 또는 Pusher 전용의 경우 별도 기재 불요 (24) : 다음에 따른다. 1) GA : 타선소화설비와 관련하여 노출갑판 상에 요구되는 방폭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2) GC : 타선소화설비와 관련하여 노출갑판 상에 방폭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선박에 부기한다. Type A : permanent connection 형식 Type B : removable connection 형식
	- Salvage Supply Anchor <이전 특기사항 추가> Oil Recovery(GA, GB 또는 GC) ⁽²⁵⁾	(GA 또는 GC) ⁽²⁴⁾	

<이하 생략>

개 정 안

부록 1-1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 및 기재요령

1. 선급부호

1.1 선종 및 특기사항

1. ~ 14. <생략>

선종	특기사항		비고
15-1. Tug Boat <u>(2020)</u>	A* (용도)	B (노출갑판 상에 요 구되는 방폭)	A* : 특기사항, A(용도)와 관련하여, Offshore Support Vessel(OSV)의 특기사항 부호인 FFS1, FFS2, FFS3 또는 FF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OSV의 특기사항 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19) - : Tug 또는 Pusher 전용의 경우 별도 기재 불요 (24) : <u>“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소화설비 등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Fire-Fighting” 특기사항을 부여하며 GA 또는 GC는 다음에 따른다.</u> 1) GA : 타선소화설비와 관련하여 노출갑판 상에 요구되는 방폭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2) GC : 타선소화설비와 관련하여 노출갑판 상에 방폭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선박에 부기한다. Type A : permanent connection 형식 Type B : removable connection 형식
	- Salvage Supply Anchor <u>Fire-Fighting(GA 또는 GC)⁽²⁴⁾</u> Oil Recovery(GA, GB 또는 GC) ⁽²⁵⁾	(GA 또는 GC) ⁽²⁴⁾	

<이하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376 242 801 280">부록 1-2 비손상 복원성 지침</p> <p data-bbox="515 319 689 357">서문 <생략></p> <p data-bbox="443 437 761 475">A편 강제기준 <생략></p> <p data-bbox="228 549 976 587">B편 특정선종에 대한 권고사항 및 추가지침 <생략></p> <p data-bbox="183 699 313 730"><이하 생략></p>	<p data-bbox="1366 242 1904 280">부록 1-2 비손상 복원성 지침 (2020)</p> <p data-bbox="1554 319 1729 357">서문 <생략></p> <p data-bbox="1482 430 1805 469">A편 강제기준 <생략></p> <p data-bbox="1267 542 2016 580">B편 특정선종에 대한 권고사항 및 추가지침 <생략></p> <p data-bbox="1164 699 1375 730"><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록 1-12 제조중등등록검사 시의 선체검사</p> <p>1. ~ 7. <생략></p> <p>8. 신조활동에 대한 검사 및 시험방안서</p> <p>(1) 조선소는 검사 및 시험을 받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들 방안을 시작회의 때 검토 및 승인을 위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 방안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p> <p>(가) 완결된 강제작업의 검사를 위한 방안 - 일반적으로 블록분할도를 말하며 선행탑재 및 탑재 또는 기타 관련단계에서 블록 상호간의 연결에 대한 상세를 포함한다.</p> <p>(나) 필요한 경우 용접 전 조립검사방안</p> <p>(다) 모든 수밀 및 풍우밀폐쇄장치 뿐만이 아니라 구조시험(누설 및 정수압)방안</p> <p>(라) 비파괴 검사방안</p> <p>(마) 특정 선박형식 또는 정부대행요건에 대한 기타 방안</p> <p>(2) 방안서 및 이 방안서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해당 검사활동이 진행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사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p> <p>(3) (1)호 및 (2)호에 추가하여,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2-1장 A-1편 3-10규칙 적용대상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인 경우 부록 1-12-2를 참조할 것.</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록 1-12 제조중등등록검사 시의 선체검사</p> <p>1. ~ 7. <생략></p> <p>8. 신조활동에 대한 검사 및 시험방안서</p> <p>(1) 조선소는 검사 및 시험을 받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들 방안을 시작회의 때 검토 및 승인을 위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 방안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u>(2020)</u></p> <p>(가) 완결된 강제작업의 검사를 위한 방안 - 일반적으로 블록분할도를 말하며 선행탑재 및 탑재 또는 기타 관련단계에서 블록 상호간의 연결에 대한 상세를 포함한다. <u>(참고용)</u></p> <p>(나) 필요한 경우 용접 전 조립검사방안 <u>(승인용)</u></p> <p>(다) 모든 수밀 및 풍우밀폐쇄장치 뿐만이 아니라 구조시험(누설 및 정수압)방안 <u>(승인용)</u></p> <p>(라) 비파괴 검사방안 <u>(승인용)</u></p> <p>(마) 특정 선박형식 또는 정부대행요건에 대한 기타 방안 <u>(승인용)</u></p> <p>(2) 방안서 및 이 방안서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해당 검사활동이 진행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사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p> <p>(3) (1)호 및 (2)호에 추가하여,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2-1장 A-1편 3-10규칙 적용대상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인 경우 부록 1-12-2를 참조할 것.</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록 1-16 탱크 및 밀폐경계에 대한 시험절차 (2018)</p> <p>제조중 등록검사에 있어서 구조시험, 누설시험 및 사수시험은 다음에 따른다.</p> <p>1. 일반사항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A편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적용대상선박</p> <p>1.~ 3. <생략></p> <p>4. 시험절차</p> <p>(1) ~ (3) <생략></p> <p>(4) 시험방법</p> <p>(가) ~ (다) <생략></p> <p>(라) 탱크 공기압 시험</p> <p>(a) 모든 경계의 용접부, 탑재용접이음부 및 관의 연결부를 포함한 관통부는 승인된 절차에 따르며, 대기압과의 차이가 +15kPa 이상의 안정된 압력 하에 비눗물/세제 또는 전용제품과 같은 누설탐지용액을 도포하여 검사하여야 한다.</p> <p>(b) 시험압력에 해당하는 수두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높이의 U자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U자관의 횡단면적은 탱크에 공기를 공급하는 관의 횡단면적보다 커야한다. <u>요구되는 시험압력을 검증하기 위해 두 개의 교정된 압력게이지를 사용하는 배치는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권고사항 Rec. No.140 (Recommendation for Safe Precautions during Survey and Testing of Pressurized Systems)의 조항 F5.1과 F7.4를 고려해서 인정할 수 있다.</u></p> <p>(c) 시험 용접부는 이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첫 번째 검사는 누설탐지용액을 도포하는 즉시 실시하며, 두 번째 검사는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작은 누설을 검출하기 위하여 약 4~5분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록 1-16 탱크 및 밀폐경계에 대한 시험절차 (2018)</p> <p>제조중 등록검사에 있어서 구조시험, 누설시험 및 사수시험은 다음에 따른다.</p> <p>1. 일반사항 <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A편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적용대상선박</p> <p>1.~ 3. <현행과 동일></p> <p>4. 시험절차</p> <p>(1) ~ (3) <현행과 동일></p> <p>(4) 시험방법</p> <p>(가) ~ (다) <현행과 동일></p> <p>(라) 탱크 공기압 시험</p> <p>(a) 모든 경계의 용접부, 탑재용접이음부 및 관의 연결부를 포함한 관통부는 승인된 절차에 따르며, 대기압과의 차이가 +15kPa 이상의 안정된 압력 하에 비눗물/세제 또는 전용제품과 같은 누설탐지용액을 도포하여 검사하여야 한다.</p> <p>(b) 시험압력에 해당하는 수두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높이의 U자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U자관의 횡단면적은 탱크에 공기를 공급하는 관의 횡단면적보다 커야한다. <u>U자관 대신에 두 개의 압력게이지를 사용하는 경우</u>, 요구되는 시험압력을 검증하기 위해 두 개의 교정된 압력게이지의 <u>를 사용하는</u> 배치는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권고사항 Rec. No.140 (Recommendation for Safe Precautions during Survey and Testing of Pressurized Systems)의 조항 F5.1과 F7.4를 고려해서 인정할 수 있다. <u>(2020)</u></p> <p>(c) 시험 용접부는 이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첫 번째 검사는 누설탐지용액을 도포하는 즉시 실시하며, 두 번째 검사는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작은 누설을 검출하기 위하여 약 4~5분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아) 침투시험

맞대기 용접부 또는 기타 용접이음부의 시험은 저 표면장력 유체를 구획 경계 또는 구조배치의 한쪽에 도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규정된 시간 이후에 경계의 반대쪽에서 액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구획 경계의 밀폐성이 검증된 것으로 본다. 특정한 경우, 누설검출을 돕기 위하여 반대쪽에 현상액을 칠하거나 뿌릴 수 있다.

<그림 추가>

<이하 생략>

개 정 안

(아) 침투시험

맞대기 용접부 또는 기타 용접이음부의 시험은 저 표면장력 유체를 구획 경계 또는 구조배치의 한쪽에 도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규정된 시간 이후에 경계의 반대쪽에서 액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구획 경계의 밀폐성이 검증된 것으로 본다. 특정한 경우, 누설검출을 돕기 위하여 반대쪽에 현상액을 칠하거나 뿌릴 수 있다. (그림 1 참조)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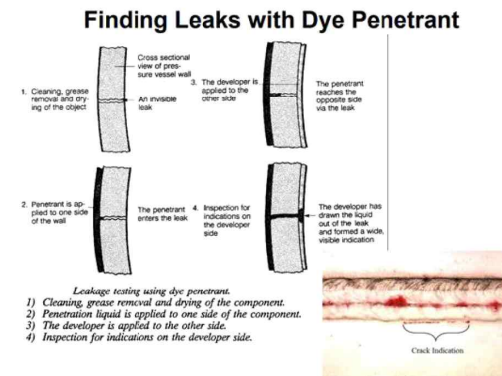


그림 1. 침투시험 방법 (from IACS Hull Panel)

<이하 현행과 동일>

전문공급자 승인 지침 개정사항

Feb. 2020



- 주요 개정 내용 -

(1) 2020.03.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해양수산부 지도감독 시 식별된 개선필요사항(2019-KR-3(개선))

(1) 2020.03.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문</p> <p>1. 일반사항 우리 선급은 계측, 시험 또는 안전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정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이 요건 및 관련된 부록 A편 또는 B편의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p> <p>2. 목적 이 절차의 목적은 전문공급자의 승인 및 인증에 대한 최소요건을 정하는 것이며 최초심사 및 갱신심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생략></p> <p>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4. 적용</p> <p>(1) ~ (2) <생략> (3) 그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검사원이 협약증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는 경우, 전문공급자는 관련기국의 위임을 받은 선급의 승인 및 검증을 받아야 한다.(즉, 해당 기국의 선박에 서비스가 행해지거나 서비스에 장비가 이용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우리 선급은 다음에 의한 승인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당 기국 (나) 기국을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다) 기국이 수용 할 수 있는 기타 조직(예를 들어 : 다른 정부 등) <u><새롭게 추가></u></p>	<p style="text-align: center;">서문</p> <p>1. 일반사항 우리 선급은 계측, 시험 또는 안전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정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이 요건 및 관련된 부록 A편 또는 B편의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p> <p>2. 목적 이 절차의 목적은 전문공급자의 승인 및 인증에 대한 최소요건을 정하는 것이며 최초심사 및 갱신심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p> <p>3. <생략></p> <p>4. 적용</p> <p>(1) ~ (2) <생략> (3) 그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검사원이 협약증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는 경우, 전문공급자는 관련기국의 위임을 받은 선급의 승인 및 검증을 받아야 한다.(즉, 해당기국의 선박에 서비스가 행해지거나 서비스에 장비가 이용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우리 선급은 다음에 의한 승인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당 기국 (나) 기국을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다) 기국이 수용 할 수 있는 기타 조직(예를 들어 : 다른 정부 등)</p> <p><u>다만, 대한민국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의 경우, 우리 선급은 다음에 의한 승인을 인정할 수 있다. (2020)</u> <u>(가) 기국</u> <u>(나) 주관청을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u> <u>(다) 주관청이 인정하는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 선급과 한국선급이 상호 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해당 선급</u></p>